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강화〉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41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6. 19.
3. 회 부 일: 2024.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 취득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생략)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 ----- -----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u>2년 이상</u>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1. ----- ----- <u>4년 이상</u> ----- -----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u>3년</u> 의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u>1년 이상</u>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 <u>5년</u> 의----- ----- <u>3년 이상</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귀화

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됨.¹⁾

이 중 제6조제2항이 규정하는 간이귀화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고, 상기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는 외국인 등도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2022년 다문화 혼인²⁾은 17,428건으로 전년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는데, 국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고, 2022년에 다시 증가하였음.³⁾

1)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생략)

2) 본 보고서의 “다문화 혼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결혼이민자등과 한국인의 결혼을 의미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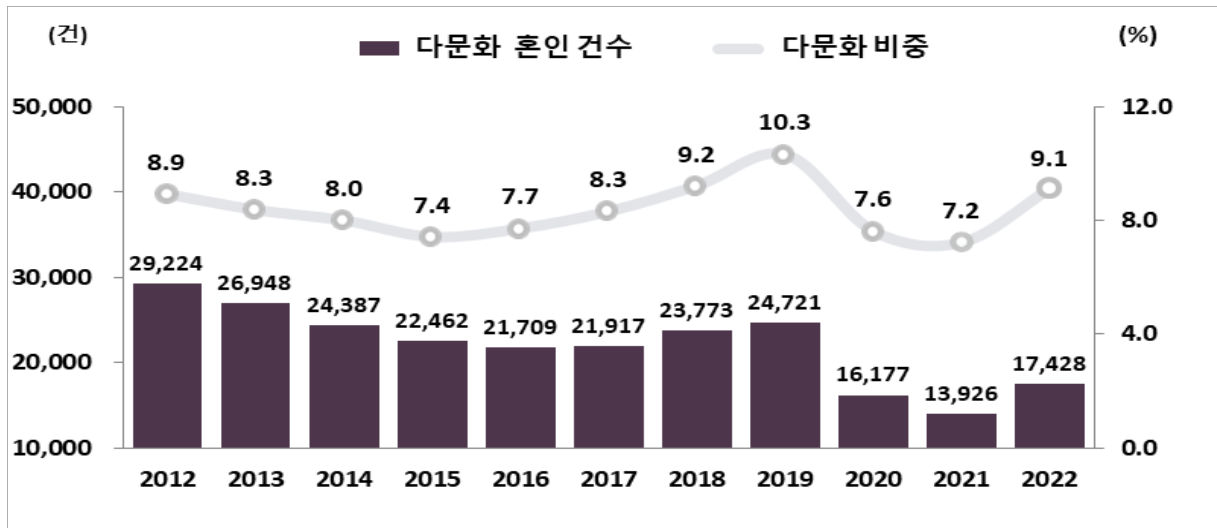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출처 : 통계청,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12~2022년 다문화 혼인 건수 및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이러한 다문화 혼인 비중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을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특히 농촌 지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중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의 2년을 4년으로,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의 3년, 1년을 각각 5년, 3년으로 하여 다문화

4) 참고로,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의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5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15년 미만(23.6%), 5년 이상~10년 미만(22.1%) 순으로 많음. 다문화 이혼 중 결혼생활 지속기간 5년 미만의 비중은 2012년 53.7%에서 2022년 31.8%까지 감소하였으나,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17.4%)보다는 높은 수준임 (출처 : 통계청,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혼인이 우리나라 국적 취득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귀화요건의 강화를 통해 혼인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제고하고 국적 취득제도 악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간이귀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적법」은 일반귀화(제5조)를 위하여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지닐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질 것,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④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등 총 7가지 요건⁵⁾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간이귀화(제6조)와 특별귀화(제7조) 유형을 정하여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음.⁶⁾⁷⁾

이러한 간이귀화는 친자관계(제6조제1항) 또는 혼인관계(제6조제2항)에 토대한 점을 감안하여 귀화허가에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을 일반귀화(5년)에 비하여 짧게(2년, 1년) 설정한 것인데, 이 기간을 4년, 3년으로 늘릴 경우 일반귀화에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과 차이가 적어져 간이귀화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5) 이외에도, ⑤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⑥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⑦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6) 한국법제연구원,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p.94

7) 간이귀화의 경우 ①, ②요건을, 특별귀화의 경우 ①,②,③ 또는 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있다고 사료됨.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농촌 지역 거주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66.8%), 외국인 남편(20%), 귀화자(13.2%)로,⁸⁾ 농촌 지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 다문화 혼인 사례의 20%에 해당하는 외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강화된 귀화요건이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02)6788-5053

8) 통계청,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